

新·舊 圖書館法 對照表

舊 法	新 法
第1章 總 則	第1章 總 則
<p>第1條(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記錄·視聽覺資料·國家 및 地方行政資料·鄉土資料 및 기타 필요한 資料(이하 “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莫集·整理·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查·研究·學習·教養·레크리에이션 기타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1條(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각 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國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莫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查·研究·學習·教養 등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施設을 말한다.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라 함은 圖書館이 莫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 등 각종 印刷資料, 映畫필름·슬라이드·音盤·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 등 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 등 行政資料,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教養·調查·研究 및 教育·文化活動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舊 法	新 法
	<p>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5.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 이하의 各級學校(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서 教員과 學生의 教授·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p> <p>6.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7.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이나 身體障礙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教養·調查 및 研究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第3條(圖書館의 種類) ①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學校圖書館·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p> <p>②前項에서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하여 公衆의 教養과 調查·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③第1項에서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하여 學生 및 教員의 學習·教養·調查·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p> <p>④第1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教養과 調査·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3條(圖書館의 종류)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p>
<p>第4條(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①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p>	<p>第4條(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p>

舊 法	新 法
<p>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설</div>	<p>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5條(大學圖書館等의 이용제공) ①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p> <p>第6條(圖書館의 施設·資料) ①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建物·圖書館資料·閱覽施設 및 기타의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公共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이용에 便利하고, 保健·衛生 또는 管理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閣令으로 정한다.</p> <p>第6條(司書職員의 配置) ①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②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정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설</div>
	<p>第7條(司書職員 등)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教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2級正司書 및 次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8條(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①각종 圖書館은 資料의 效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喪失 또는 汚損된 資料를 폐기 혹은 除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9條(圖書館發展委員會)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效用적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등에 관하여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敎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委員會의 구성 및 職務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p>

舊 法	新 法
신설	<p>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圖書館振興基金)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施設·운영 기타 圖書館振興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②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政府出捐金 2.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3.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신설	<p>第11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文敎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p> <p>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金造成計劃 2. 基金運用計劃 3. 기타 基金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文敎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의 教育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p> <p>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신설	<p>第12條(租稅減免)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p> <p>②政府는 第1項에 의하여 圖書館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產에 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한다.</p>
第7條(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第8條(圖書館의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第30條(使用料·入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 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入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舊 法	新 法
<p>第9條(監督廳) ①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郡教育長(서울特別市·釜山市教育委員會를 포함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敎部長官의 地導·監督을 받는다.</p> <p>②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地導·監督을 받는다.</p>	<p>第25條(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監督 등) ①市·郡教育長은 第24條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p> <p>②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10條(停館命令) ①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停館을 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美風·良俗을 顯著하게 害하는 行爲가 있을 때. 2.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維持하지 못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停館의 方法 이외로는 이를 監督할 수 없을 때. 	<p>第27條(業務의 정지) 市·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6條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p>第11條(廢館申告) ①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그 事由와 圖書에 관한措置狀況을 밝혀 監督官廳에 廉館申告를 하여야 한다.</p>	<p>第28條(私立公共圖書館의 廉館申告) ①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廉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郡教育長에게 廉館申告를 하여야 한다.</p> <p>②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圖書館에 관한 登錄을 抹消한다.</p>
<p>第12條(圖書館資料의 제공과 納本) ①國家機關이 官報·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가 公報·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각각 提供하여야 한다.</p> <p>③出版社 또는 前2項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刊行物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④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을 納本한 者가 그 刊行物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补償하여야 한다.</p>	<p>第17條(資料의 提供 및 納本)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圖書·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补償을 하여야 한다.</p>

舊 法	新 法
<p>第13條(圖書館協會) ①圖書館의 設立者は 圖書館相互間의 資料交換·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の 社會的·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p>	<p>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納本의 節次·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4條(圖書館協會) ①圖書館의 設立者は 圖書館 상호간의 情報資料交換 및 業務協助, 圖書館의 運營·管理에 관한 研究,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圖書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p> <p>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章 公共圖書館</p> <p>第1節 總 則</p> <p>第14條(設立者) 公共圖書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置할 수 있다.</p> <p>第15條(公共圖書館의 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圖書館資料를 莊集·整理·保存하여 公衆의 이 용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하는 일. 2. 讀書會·研究會·鑑賞會·展示會 기타 行事を 主催하거나 嘉勵하는 일. 3.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助하여 圖書館資料를 相互 交流하는 일. 4.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査·研究하는 일. 5.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p>第3章 公共圖書館</p> <p>第19條(設立) 國家·地方自治團體·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p> <p>第20條(業務)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資料의 莊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3.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社會敎育 및 文化活動의 主催 또는 嘉勵 4.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交流 5.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査·研究 6.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舊 法	新 法
<p>第2節 國立中央圖書館</p> <p>第16條(設立) ①文敎部長官所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②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p> <p>第17條(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5條에 規定한 事項 외에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家에 관한 文獻의 蒐集 및 保存. 2.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 3.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4. 圖書館學에 대한 調查·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신설 </div>	<p>第2章 國立中央圖書館</p> <p>第15條(國立中央圖書館) ①文敎部長官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p> <p>第16條(業務) ①國立中央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外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다른 圖書館과의 情報資料의 流通 3.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4.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情報協力網의 統轉 5.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6.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 및 社會教育活動의 地尊·지원 7. 圖書館운영에 관한 調查·研究 8. 司書職員의 研修 9. 기타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p>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2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優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相互協力한다.</p> <p>第18條(國際標準資料番號)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發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舊 法	新 法
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p>第18條(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①各級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하며 地域的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p>	<p>第21條(公共圖書館의 設置·육성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教育과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육성하여야 한다.</p> <p>②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老人·身體障礙者등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諸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③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諸요한 경우에는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圖書館을 둘 수 있다.</p>
<p>第19條(補助) 國庫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당해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요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2條(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운영비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p> <p>②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諸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신설	新設
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p>第20條(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廳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p>	<p>第31條(資料의 제공)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p>
신설	新設
	<p>第24條(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敎育長(서울特別市·直轄市의 敎育區總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舊 法	新 法
<p>第21條(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 ②前條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이 정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 범위 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前項의 规定에 의하여 補助를 한 때에는 그 補助를 받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대하여 特別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p>	<p>第29條(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 범위 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2條(指導·助言 및 是正命令)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그 運營에 관하여 專門의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다.</p> <p>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관하여 法令의 规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命할 수 있다.</p>	<p>第26條(是正命令) 市·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第2條第3號의 规定에 의한 設立目的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p>
<p>第23條(보고) 監督廳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삭제</div>
<p>第24條(圖書館과 同種의 施設)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p>	<p>第13條(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설</div>	<h3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大學圖書館</h3> <p>第32條(設置)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规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第33條(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각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圖書館利用의 體系的 指導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情報網을 통한 情報資料의 流通

舊 法	新 法
신설	<p>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技能遂行에 필요한 業務</p> <p>第 34 條(指導·監督)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第 3 章 學校圖書館	第 5 章 學校圖書館
<p>第 25 條(設置) ①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實業高等專門學校·初級大學·大學(校)·教育大學·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p> <p>②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정한다.</p> <p>第 26 條(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初級大學·大學(校)·教育大學·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p> <p>第 27 條(一般의 이용에의 提供) 學校圖書館은 그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이용에 提供할 수 있다.</p>	<p>第 35 條(設置)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신설	삭제
신설	삭제
	<p>第 36 條(業務)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蔑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 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 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p>第 37 條(指導·監督)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舊 法	新 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설</div>	<p style="text-align: center;">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p> <p>第 38 條(設立 등) ①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p> <p>② 國家는 특정분야별로 專門的인 圖書館을 設立·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별 資料確保 및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大學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중에서 지정하여 專門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身體障礙者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에 의한 設立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郡教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설</div>	<p>第 39 條(指導·監督 등) ① 市·郡教育長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p> <p>② 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文教部長官은 專門圖書館과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설</div>	<p>第 40 條(準用) 第7條第1項의 規定은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第26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p>

舊 法	新 法
第 7 章 圖書館情報協力網	
신설	<p>第 41 條(圖書館情報協力網 구성) ① 政府는 情報資料의 流通·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각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情報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算化情報시스템을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書誌編纂·情報處理·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 3. 分擔收書·相互貸借·綜合目錄·印刷카드制度 등 圖書館運營의 效率화 4. 기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p>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效率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p>
신설	<p>第 42 條(中央館의 業務)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協力網의 各級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 協力網의 機能遂行에 관한 企劃·調整 및 指導 3. 協力網 운영의 統轄
신설	<p>第 43 條(地域代表館) ① 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두되, 公共圖書館중에서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p> <p>② 第1項의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 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效率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區(서울特別市·直轄市의 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p>
신설	<p>第 44 條(지원·協力) 協力網 機能의 效率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p>

舊 法	新 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신설</div>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罰則</p> <p>第28條(罰金) 第20條의規定에違反하여登錄을하지아니하고私立의公共圖書館을開設한者또는第10條의規定에의한監督廳의停館命令에違反한者는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p> <p>第29條(過怠料) 第12條第3項의規定에违反한者는당해刊行物의定價의5倍에상당하는金額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p>	<p>第45條(協力網의운영) 協力網의組織 및 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8章 罰則</p> <p>第46條(罰金) 第27條(第40條의規定에의하여準用되는경우를포함한다)의規定에의한命令에위반한者는100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p> <p>第47條(過怠料) ① 第24條또는第38條第3項의規定에의하여登錄을하지아니하고圖書館을開設한者는300萬원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 ② 第13條의規定을위반한者는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 ③ 第17條第2項의規定에위반한者는당해資料定價의10倍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 ④ 第3項의資料가非賣資料인경우에는당해發行資料原價의10倍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 ⑤ 第1項내지第4項의規定에의한過怠料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文教部長官·教育委員會또는教育長(이하“管轄廳”이라한다)이賦課·徵收한다. ⑥ 第5項의規定에의한過怠料處分에불복이있는者는그處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30日이내에管轄廳에異議를제기할수있다. ⑦ 第5項의規定에의하여過怠料處分을받은者が第6項의規定에의하여異議를제기한때에는管轄廳은지체없이管轄法院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그통보를받은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過怠料裁判을한다. ⑧ 第6項의規定에의한期間내에異議를제기하지아니하고過怠料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國稅帶納處分또는地方稅帶納處分의예에의하여이를徵收한다.</p>

舊 法	新 法
附 則	附 則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다만,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監督廳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設立된 特殊圖書館은 이 法에 의한 特殊圖書館 또는 專門圖書館으로 본다.